

문서번호	민원여권과-2893
결재일자	2016.2.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181호

주무관	민원행정팀장	민원여권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류미옥	김희순	구효일	고재식	김경호	02/05 김기동
협 조					

**- 행정정보공개 -**  
**2015년 추진실적 및 2016년 운영 계획**



행 정 관 리 국  
( 민 원 여 권 과 )

# - 행정정보공개 -

## 2015년 추진실적 및 2016년 운영 계획

정보공개를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전적·자발적 사전정보공개를 통한 정책소통 활성화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고자 함

### I 추진 근거
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
-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

### II 2015년 추진실적

#### 1 정보공개청구

##### 청구건수 및 처리현황

(단위:건)

연도	총건수	처 리 현 황				기타 (취하, 민원이첩)	공개율 (%)
		소 계	전부공개	부분공개	비공개		
2015	2,437	1,743	1,621	96	26	694	98.5
2014	2,285	1,428	1,324	73	34	857	97.8

□ **청구방법별 현황**

(단위:건)

구 분	청구건수	직접	우편	모사전송	정보통신망	기타
2015	2,437	260	24	16	2,137	0
2014	2,285	251	33	23	1,978	0

□ **처리기간별 현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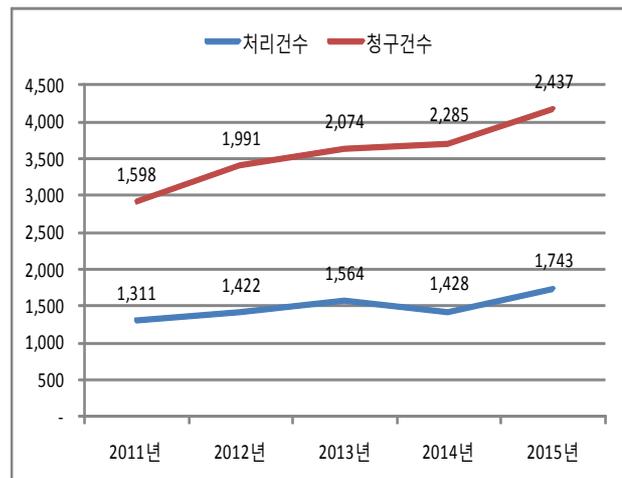
(단위:건)

구 분	계	법정 처리 기한 내에 처리				그 외	
		3일 이내	5일 이내	7일 이내	10일 이내	20일 이내	20일 초과
2015	1,743	550	459	431	232	64	7
2014	1,428	384	404	373	245	22	0

□ **2015년도 정보공개처리현황 분석**

● **청구건수 및 처리현황**

- **청구건수는 2,437건**으로  
전년도(2,285건)대비  
**152건(6.7%) 증가**함
- **처리건수는 1,743건**으로  
전년도(1,482건)대비  
**315건(21.3%)이 증가**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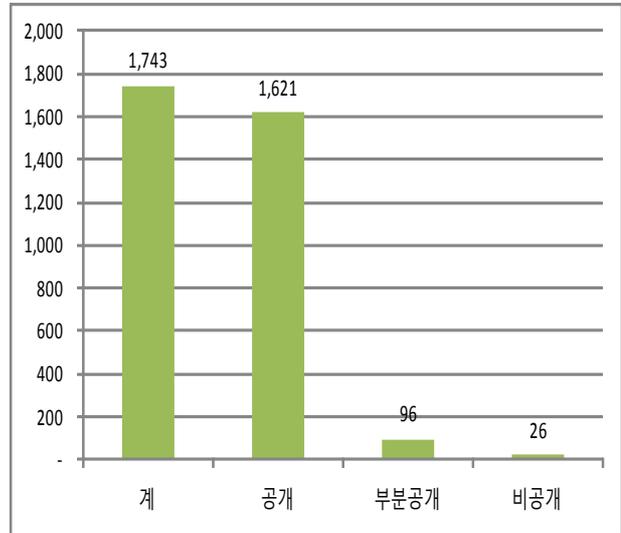


- **기타사유**

합계	청구취하	이송완료	종결처리	민원이척	정보부존재
694	271	76	163	1	183

● 공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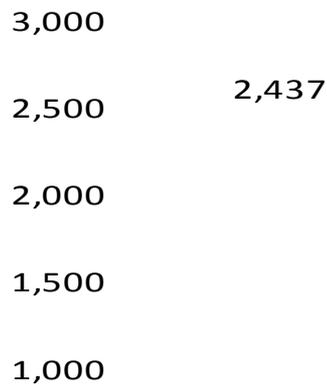
- **공개율은 98.5%(1,717건)**으로 전년도(97.8%)보다 0.7% 증가함
- **비공개건수는 26건**으로 전년도(34건)보다 8건 감소
- **부분공개건수가 96건**으로 전년도보다 23건 증가함



● 청구방법 및 처리기간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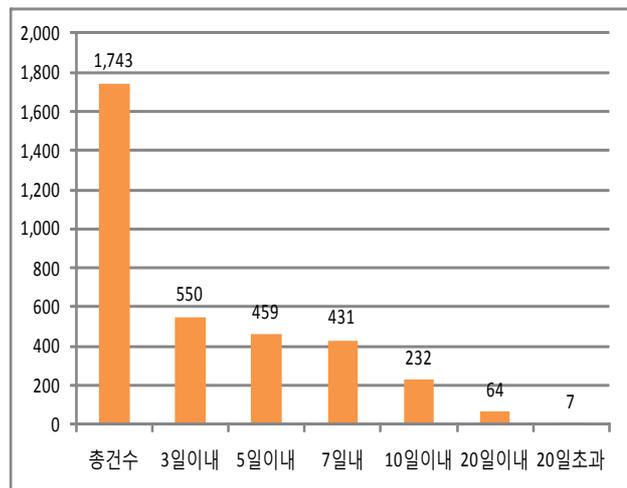
<청구방법별>

- **정보통신망을 이용**한 온라인 청구가 **87.7%(2,137건)**로 대다수를 차지하고, 전년도 대비 **159건(8%)** 증가함



<처리기간별>

- **법정기한(10일)내 처리율이 95.9%(1,672건)**으로 전년도(98.5%)보다 기한내 처리율 하락
- 기간연장하여 20일 이내 처리건수가 64건이고, 20일을 초과 처리한 건수가 7건이나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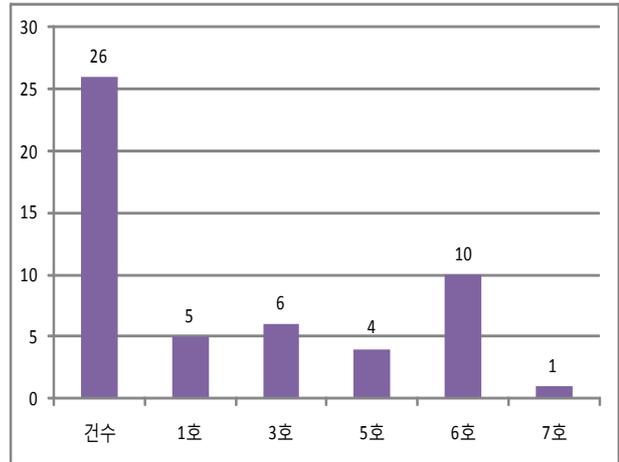


● 비공개 사유별 현황

- 비공개 사유로는

- 법령상 비밀(5건),
- 국민의 재산보호 침해(6건),
- 개인 사생활 침해(10건)

⇒ 21건으로 80.7%에 해당



- 비공개결정시 법적근거 및 비공개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부서에서는 법적 근거만 간단히 기재함(부분공개 포함)

- 비공개사유별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

(단위:건)

구분	계	제1호	제2호	제3호	제4호	제5호	제6호	제7호	제8호
		법령상 비밀 비공개	국방 등 국익침해	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침해	재판 관련정보	공정한 업무수행 지장	개인 사생활 침해	법인 등 영업상비밀 침해	특정인의 이익 불이익
2015년	26	5		6		4	10	1	
2014년	34	8		1	4	0	19	2	

## 2 사전정보공개

□ 사전정보공표

● 사전정보공표 목록 확대 현황

구분	~ 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공표개수	50	203	308	384
	-	153개 확대	105개 확대	76개 확대

□ **결재문서 원문공개 시행**

- 2015.3.1 원문공개 시행 : 부구청장이상 결재문서
- 2015.10.1 원문공개 확대시행 : 국장이상 결재문서

국장이상 문서 (‘15년 10월 ~ 12월)	공개설정 현황			공개율
	공개	부분공개	비공개	
8,486	5,344	950	2,192	74.2%

###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

□ **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**

- 위촉사유 :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
- 위 촉 일 : 2015. 8. 4
  - 3명[재위촉 2명(1회에 한해 연임 가능), 신규위촉 1명]

□ **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**

연도	안 건	비 고
2015	○ 비공개 대상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(2건) ○ 사전정보공표 목록확대에 따른 심의	참석심의(2회)
2014	○ 사전정보공표 목록확대에 따른 심의	서면심의(1회)
2013	○ 비공개 대상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○ 사전정보공표 목록확대에 따른 심의	참석심의(1회) 서면심의(1회)
2012	○ 비공개 대상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	서면심의(1회)

### 4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

□ **정보공개모니터단 활용 설문조사 실시**

- 구성인원 : 30명(동별 2명/ 남1, 여 29)

- 활동내역
  - 사전정보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후 설문조사 실시 : 2회(6월, 10월)
- 정보공개 설문조사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
  - 자원봉사시간 인정 : 1회 2시간씩(41명 참여)

## 5 기타사항

-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변경 추진 : 2015. 10. 30. 공포·시행
  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 추진
    -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[별표] 중 ‘행정정보공개자료’ 수수료에 대하여 개정
- 사전정보공표 콘텐츠 개선 : 2015. 7. 9.
  - 사전정보공표 구성화면 변경
    - 공표목록 일렬 나열 → 1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, 접근용이
    - 용어 표준화 : 행정정보공표목록 → 사전정보공표로 변경
- 행정정보공개방 운영
  - 정보공개관련 업무매뉴얼 등 자료 게시로 업무처리시 정보공유
    - 위치 : 새울 > 전자문서게시판 > 행정정보공개방
- 정보공개 교육 실시 : 8회 961명
  - 정보공개교육 및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 : 61명
  - 원문공개 확대에 따른 교육 : 7회 941명

### III

## 세부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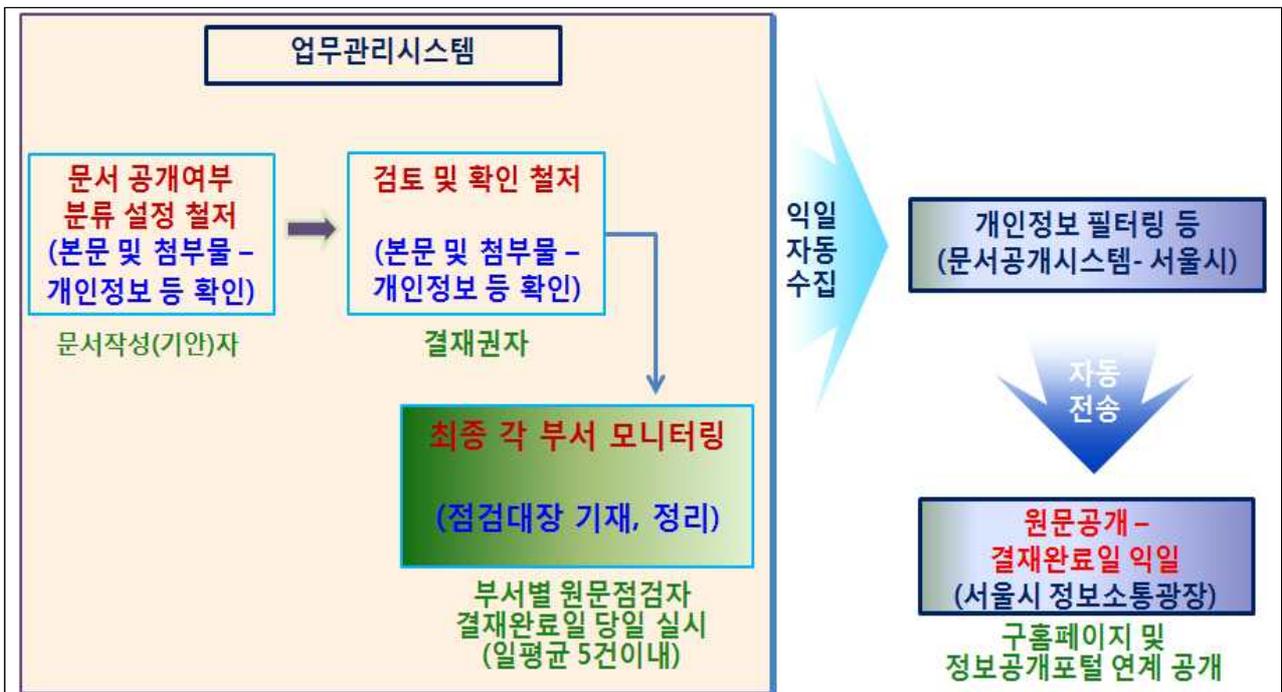
### 1 결재문서 원문공개

#### □ 원문공개 개요

- 공개대상 : 4급이상 결재문서
- 공개범위

문서구분	공 개 범 위
공 개	문서제목 및 문서정보, 결재문서 본문, 첨부물 모두 공개
부분공개	문서제목 및 문서정보, 결재문서 본문만 공개, 첨부물은 목록만 공개
비공개	문서제목 및 문서정보만 공개

- 공개시기 : 생산일 기준 다음날 자동 공개
- 공개장소 : 구홈페이지 및 서울시 정보소통광장, 정보공개포털
- 흐름도



## □ 부서별 책임제 및 원문공개 점검·관리 강화

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점검으로 원문공개로 인한 노출 방지

### ● 전부서(동)별 부서장, 담당자 책임제 강화

- 결재문서 작성전, 결재시 사전 확인 의무
  - 결재권자 : 결재전 본문 및 첨부물 필히 확인후 결재시행 철저
  - 담당자 : 원문공개형태 숙지 및 문서작성시 공개분류 철저

### ● 원문공개 점검 및 점검대장 기재·관리

- 점검대상 : 국장이상 결재문서중 공개(부분)문서
- 점검내용 :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 포함 여부 확인
- ※ 검출문서의 원문공개장소(정보소통광장 등) 공개여부 확인 병행

### ● 월별 원문공개 점검결과 사례 공유

- 전부서에서 1차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민원여권과에서 2차 재확인후 사례 공유

## 2 사전정보공표 관리

### □ 사전정보공표제도

-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없이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구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을 구민에게 사전적·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

## □ 공개위치

- 구홈페이지>광진소개>행정정보>행정정보공개>사전정보공표

## □ 사전정보공표 현황 : 384개

계	일반 행정	재정/세무	교육/도서관	문화/체육/관광	일자리/경제	복지	환경/청소/녹지
384	64	23	10	21	21	47	54
	주택/건축/지적	재난안전/민방위	토목/치수	교통/건설	보건/의료/위생	구의회	시설관리공단
	29	6	8	24	64	8	5

## □ 사전정보공표의 주기적 정비 실시

- 목 적 : 주기적 업데이트로 정보활용의 실효성 강화
- 정비시기 : 연 2회(반기별)
- 정비내용 : 공표주기에 맞는 최신 공표내용 업데이트

## 3 정보공개청구 적정 처리

### □ 부적정한 비공개 최소화

- **비공개 결정시 소속 국장 결재후 통지**
  - 공개 결정 : 과장
  - 비공개 결정 : 국장 전결로 내부통제 엄격화
- **비(부분)공개 결정시 필수 기재사항**
  - 법적근거(정보공개법 제9조1항) 및 비공개 판단근거 구체적 제시
  - 단순히 ‘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함’ 등의 불명확한 결정통지 지양

## □ 정보부존재 처리절차 준수

### ● 정보부존재 처리절차

- 정보부존재 결정시 : 민원행정팀장 협조

- 처리기한 : 7일이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준용)

※ 통지내용에 정보부존재 통지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안내(2014 서울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p40 참고)

### ● 정보부존재 대상

-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·접수하지 않은 경우

- 정보를 취합·가공해야 하는 경우

- 「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

-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

※ 행정자치부시달 [정보부존재 처리기준 및 절차] 참고  
(민원여권과-2937/15.2.3) 시행

## □ 정보공개청구 접수 통보 및 처리기간 사전예고제 실시

● 접수통보 : 정보공개청구 접수 즉시 해당부서로 통보

- 처리기간, 처리방법, 수수료 안내, 청구인 확인방법 등

● 사전예고일 : 정보공개청구 접수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

● 예고대상 : 정보공개 부서처리자에게 메일 송부

## □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단축 운영

● 단축운영 : 법정처리기한 10일 → 6일이내 처리권고

●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기간별 현황 공개

## □ 결정통지문에 대한 표준문안 활용권고 : 예시문 별첨

□ 정보공개청구 적정 처리에 대한 점검

- 목 적 : 정보공개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점 개선
- 점검시기 : 격월로 실시후 점검결과 공유
- 항목 및 내용

▶ 비공개(부분공개) 결정처리 적정성

연번	접수번호	비(부분)공개 결정 처리의 적절성				비공개 결정인 경우 소관국장 결재 여부
		1. 법적근거 제시	2. 비공개 판단근거 제시	3. 처리기한 준수여부 (10일)	4. 기한연장시 통지	

▶ 정보부존재 결정처리 적정성

연번	접수번호	비(부분)공개 결정 처리의 적절성		
		부존재사유 기재 유무	처리기한 준수 여부	민원행정팀장 협조 여부

▶ 정보공개율

계(a)	전부공개	부분공개	비공개(b)	정보공개율 (a-b)/a × 100

##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

□ 심의회 위원 현황 : 7명(내부위원 4명, 외부위원 3명)

- 위원장 : 행정관리국장
- 당연직 : 기획예산과장, 주택과장, 건설관리과장
- 위촉직 : 외부전문가
  - 임기 : 2015. 8. 4 ~ 2017. 8. 3(2년, 1회 연임 가능)

- 위촉 위원 명단

연번	성명	직업	위촉일	비고
1	곽창욱	변호사	2015. 8. 4 재위촉	
2	최윤철	교수	2015. 8. 4 재위촉	
3	한선영	변호사	2015. 8. 4 신규	

□ 심의대상

-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-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
-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
-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□ 심의회 안건 상정절차



□ 심의방식 : 참석심의(원칙)

- 실질적 참석심의 개최 :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
- 서면회의 지양하되,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불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

## 5 정보공개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

정보공개모니터단을 활용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적극 활용

### □ 모니터단 구성

- 구성인원 : 30명(동별 2명)
- 활동기간 : 2014. 5. 13 ~ 2016. 5. 12
- 활동내역
  - 사전정보공개에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
  -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(설문조사) : 1회
  -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수시 의견제시
- 모니터링 참여자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: 1회 2시간
- 모니터단 재구성
  - 사유 :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 위촉
  - 활동기간 : 2016. 5. 13 ~ 2018. 5. 12

## V 추진 일정

연번	추진 계획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1	결재문서 원문공개 모니터링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2	사전정보공표 정비				■						■	
3	정보공개모니터단 활용 모니터링 (설문조사)					■						
4	정보공개모니터단 재구성				■							
5	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	■		■		■		■		■		■

## VI

## 행 정 사 항

- 원문공개 점검 및 점검대장 기재관리 철저
- 문서작성시 공개여부 분류 및 검토 철저
  - 기 안 자 : 공개분류 철저
  - 검토자 및 결재자 :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포함 여부 확인
  - 임의 비공개설정 지양
- 본문에 개인 정보, 민감한 사항 등 비공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, 가능한 본문에는 삭제하고  
첨부물로 분리하여 “부분공개”로 설정
- 사무전결규정 준수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준수
-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및 기한 준수

붙임 통지문 예시 1부. 끝.